

김포시 고시 제2024-230호

김포재정비촉진지구 북변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경미한변경)인가 고시

경기도 고시 제2011-336(2011.11.28.)호로 김포재정비촉진계획결정 고시되고, 김포시 고시 제2019-111(2019.7.4.)호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, 김포시 고시 제2023-135(2023.5.31.)호, 제2024-42호(2024.2.6.)호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, 김포시 고시 제2020-227호(2020.9.29.)호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, 김포시 고시 제2022-181(2022.7.20.)호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된 김포재정비촉진지구 북변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 규정에 의거 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 처리하고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
2024. 09. 25.

김 포 시 장

1. 사업의 명칭(변경없음) : 김포재정비촉진지구 북변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2. 위치 및 면적(변경없음) : 김포시 북변동 329-2번지 일원 / 59,561.60㎡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(변경없음) : 북변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임도상, 김포시 북변로 20-6
4. 정비사업시행기간(변경없음) : 변경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8개월
5. 사업시행계획인가일(변경없음) : 2019. 07. 04.
6. 의제처리 되는 사항(변경)
 -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
7. 수용(사용)할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(변경없음)
8. 건축물의 대지면적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
9.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
10. 변경사유 및 내용
 - 변경사유 : 지반상태 재검토, 안전성·시공성 확보 및 유지관리 개선,오기·누락사항 정정
 - 변경내용 : 일부 구간 기초 변경, 설비공간 확보, 근린생활시설 화장실 비상벨 설치,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, 도면 오류 정정 등
11. 관계도서를 김포시청 도시관리과(031-980-5514)에 비치하고 있으니, 토지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